

5. 그 밖에 위 · 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**제40조의2(위 · 수탁계약의 갱신 등)** ① 운송사업자는 위 · 수탁차주가 위 ·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· 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. <[개정 2018. 4. 17.](#)>

1. 최초 위 · 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 · 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위 · 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·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
나.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위 · 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2. 최초 위 · 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 · 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위 · 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· 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(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)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(위 · 수탁계약 상의 월지급액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월지급액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)

다.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 · 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 · 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
라.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· 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· 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 · 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 · 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 · 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 · 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 · 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 · 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[본조신설 2014. 5. 28.](#)]

**제40조의3(위 · 수탁계약의 해지 등)** ① 운송사업자는 위 · 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 · 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· 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· 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.

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(위 · 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차주의 위 · 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<[신설 2015. 6. 22.](#)>

1. 제19조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3호 또는 제5호

2.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(위 · 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 · 수탁계약의 위 · 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 · 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위 · 수탁차주였던 자와 위 · 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 · 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<[신설 2015. 6. 22.](#)>

[[본조신설 2014. 5. 28.](#)]